

투 자 자 문 계 약 서



vonext investment advisory

보넥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1층 1105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Tel. 1600-2078 / Fax. 02-3145-6758 / <https://vonext.co.kr>

투자자문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보넥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제 4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건전한 운용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3.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 ② 회사는 투자자문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 업무를 운영한다.
1. 투자자문 상담 및 투자 권유
고객이 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요청하면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목적, 투자자문규모 등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를 권유하고, 고객에게 계약체결 전에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를 교부한다.
 2. 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체결
고객과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3. 투자자문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내용과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파악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5. 투자자문업무 종료
회사는 본 계약의 목적이 최종 완료된 경우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고객의 요청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투자자문업무를 종료한다.

제 6 조 (고객 파악 및 투자자문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사전에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 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

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투자자문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자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③ 기본수수료는 별지에서 성과형, 종합형 방식 중 적용하여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문자산의 규모, 성격 및 자문방법에 따라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세부자문계약조건”에 따른다.
- ④ 성과수수료¹⁾는 성과형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투자대상 자산, 위험 선호 정도, 투자예정 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은 투자자문 서비스에 관하여 투자자문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적합성 원칙 관련 사항)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일반 투자자로 확인될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1호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 고객의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인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적정성 원칙 관련 사항)

- ① 회사는 고객에게 적정성의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및 처분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의 원칙 대상 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고객의 투자자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 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따르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의 판단 기준은 금소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회사는 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설명 의무)

- ① 회사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에게 계약 권유를 할 때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등 상품 측면과 고객의 투자 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투자 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할 때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 투자자인 고객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의 임직원 등은 고객이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광고 관련 준수사항)

-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 1) 투자에 따른 위험

-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 ②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 14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 ①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 ②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문업무의 수행을 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해상충의 공정한 관리와 방지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자문업무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자문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이해상충의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제 15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본 계약서 ‘<별지> 세부계약조건 제5호’에 정하는 투자자문담당자는 회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

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 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9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 21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제 22 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회사가 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이하 “위법계약 해지권”),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2. 계약 기간 종료 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고객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3. 고객이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을 것
 4. 고객이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 사실이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였을 것
-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행사된 계약의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
 1.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고객이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고객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회사가 본조 제1항의 기한 내에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한 경우
 5. 고객이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행사된 경우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고객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지 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알릴 것
 - 2. 사실 확인 또는 자료 확인을 이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⑤ 회사가 본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⑥ 본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⑦ 회사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은 본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한 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7 조 (관계법규등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로부터 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원
3. 투자자문수수료
- ☐ 성과형 : 기본수수료 50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과수수료 연 수익금의 10%
- ☐ 종합형 : 기본수수료 80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과수수료 면제
- ☐ 탑클래스 : 기본수수료 120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과수수료 면제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 성과형의 성과수수료는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입금한다.
- ☐ 수수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4-690838 (보넥스트투자자문)
5. 투자자문담당자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나현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부전공 회계학)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 자문역(2025.09.09.~) 前 IM증권 (구 하이투자증권) PB 前 메타투자자문 투자자문역 이사 前 미래에셋증권 (구 대우증권) PB	일반운용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장석우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 투자자문역 과장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6. 거래증권회사 계좌
☐ 거래증권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E-Mail :

8. 회사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105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 전 화 : 1600-2078

☐ 팩 스 : 02-785-2078

☐ E-Mail : vonextinv@gmail.com

9.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 지급 기준일 3일 초과 시 적용

☐ 제22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 법정이자 적용

10. 회사의 임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주주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1. 당해 임직원의 제재 조치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고객)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 상 호 : 보넥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7, 1105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대표이사 : 박 경 목

